

# 특수경비용역 계약특수조건

## 제1조 (용역업무의 수행)

계약자는 부산김해경전철(주)(이하“회사”라한다)와 계약체결 즉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장소에 사전 배치하여 용역업무 인수인계 및 계약기간 동안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## 제2조 (종업원에 대한 책임)

계약자는 전 종업원의 건강, 신원, 풍기 및 작업 규율의 유지, 안전사고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.

## 제3조 (관리책임자의 임무)

관리책임자(경비대장)는 타 경비원을 관리·감독하여야 하며, 업무수행 중 특이사항에 대하여 관리부서와 관리담당자에게 신고하고 관리부서와 관리담당자의 요청사항을 계약자에 전달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, 회사와 계약자간의 업무연락 등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이행하여야 한다.

## 제4조 (결원 보충)

계약자는 종업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보충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.

## 제5조 (경비원의 복장)

계약자는 회사측의 사전동의를 얻어 종업원의 근무복을 정하여 전 종업원에게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게 하고, 경비업무에 필요한 모자, 곤봉, 손전등, 호루라기, 순찰시계, 가스분사기 등 경비와 관련한 일체의 장비를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.

## 제6조 (근무자 실명제)

계약자는 종업원의 각 근무지(경비실)에 근무자의 명패를 게시토록 하고, 근무복에 명찰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.

## 제7조 (근무규정 및 경비업무요령서 비치)

계약자는 이 계약서에 의한 용역업무 개시와 동시에 종업원의 근무규정과 경비요령서

를 회사와 협의 작성하여 관리부서와 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고, 모든 근무장소에도 비치하여야 한다.

#### 제8조 (관계법령의 준수)

계약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## 제9조 (적정임금의 보장)

- ① 계약자가 계약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계약담당직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예정가격 산출내역을 기초로 한 직접노무비는 원가계산상의 금액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, 그 이하로 임의 감액 조치할 수 없다.
- ②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종업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, 계약 내역서상 임금에 대한 지급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직원의 증거서류 열람 또는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③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, 적게 지급하였을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매월 지급하는 용역비에서 미지급 임금만큼 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.
- ④ 계약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.

#### 제10조 (결원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급)

경비용역 인원에 결원(결근포함)이 있을 때에는 월 용역비 지급시 결원(결근포함)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감하고 지급한다.

#### 제11조 (도난시 변상 및 계약내용의 변경)

- ① 건물내 모든 도난사고에 대하여 계약자가 용역계약서 및 경비요령서에 따라 사고발생 추정시간 동안의 경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지고 변상하여야 하며, 미변상시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용역비에서 차감한다.
- ② 계약기간 중 계약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경비대상 건물에 대한 도난사고 2회 이상 발생 및 회사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해당 건물에 대해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측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용역범위 대상을 조정 할 수 있다.

### **제12조 (인수인계를 위한 합동근무)**

계약자는 사전에 직원을 확보하여 계약개시일 이전에 전임 근무자와 2일 이상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 각 경비건물의 특성을 사전에 숙지시키는 등 경비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**제13조 (계약기간 연장)**

이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년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는 상호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